

高麗 太祖代 姓貫 賜與와 그 의미

* 金 昌 謙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콘텐츠편찬연구실장

1. 머리말
2. 姓氏와 賜姓
3. 賜姓과 豪族
4. 賜姓 및 成績과 거주 제한
5. 맺음말

[국문요약]

이 글은 고려 태조대 이루어진 賜姓과 賜貴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태조가 행한 사성은 특정한 호족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친족 구성원과, 비록 그들과 동일 부계 혈연의 관계에 있지 않지만 그 집단에 포함된 모든 양민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후대에 동성동본으로 인식하고 때로는 동일인을 시조로 존송하더라도 실제는 부계 혈연에서는 시조 인물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점차 본관제도를 확대 실시하였다. 즉 태조는 통일을 이룬 뒤 공신과 고급관료 및 호족들에게 그들의 출신지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내리는 한편, 또 940년(태조 23) 전국 군현을 개편하여 각 구획에 토착하고 있던 유력층에게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성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지방사회를 재편성하는 실질적인 작업으로 943년(태조 26) 무렵에 戶籍을 작성해 나갔다.

이러한 태조의 사성과 본관 수여 및 호적 작성은 백성들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면서 당시 사회적 현상의 하나였던 유이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씨의 시조를 일정한 지역단위에 본관의 공동시조와 공동수호신으로 인정하여 공동제사를 행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여기에서 이탈하여 유리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사성과 본관 수여, 호적 작성, 그리고 공동체의식 고취 등은 인민을 특정지역에 긴박시킴으로써 고려초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이요 방법이였다.

1. 머리말

고려 태조는 새로운 왕조의 건국과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지방의 세력가인 이른바 호족들을 회유·결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그 방법은 대호족세력에게 ‘王’씨를 비롯한 여러 성씨를 하사하여 擬制家族的 관계를 맺거나 신분적인 특혜를 주었으며,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또 중앙으로 올라온 호족들에게 관작을 주거나 事審官에 임명하여 출신지의 통제를 위임해 주는 한편, 호족들의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잡아두는 其人制를 실시하기도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地方制度의 개편과 더불어 당시 전국 곳곳에 존재하던 호족들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포섭·연합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다

우리 성씨를 보면 고려 태조 때부터 賜姓을 널리 하였다.¹⁾ 사실상 태조는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개국공신·관료 및 귀순호족들에 대한 賜姓을 여러 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성을 대체로 지방세력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 그러나 성씨는 반드시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만은 아니다. 즉 동성동본이라고 해도 모두가 혈연적 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성씨의 변천사에서 고려초가 성과 본관의 체제가 정착되는 시기라면, 어말선초는

1) 申奭鎬, 『韓國姓氏의 概說』, 『韓國姓氏大觀』, 創造社, 1971, 25-26쪽.

2) 고려시대 성씨와 본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旗田巍, 『高麗時代における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子女均分相續』, 『東洋文化』 22, 1957; 金壽泰, 『高麗 本貫制度의 成立』, 『震檀學報』 52, 1981; 金壽泰, 『高麗初期의 本貫制度』, 『한국중세사연구』 8, 2000; 박은경, 『高麗時代 鄉村社會構造와 本貫』,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0; 浜中昇, 『高麗의 歷史的位置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1, 1984; 浜中昇, 『高麗初期村落의 性格をめぐつて』, 『朝鮮學報』 144, 1992; 宋俊浩, 『韓國의 氏族制에 있어서의 本貫 및 始祖의 問題』, 『歷史學報』 109, 1986;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서울대, 1980; 李鍾書, 『羅末麗初 姓氏 사용의 擴大와 그 背景』, 『韓國史論』 37, 서울대, 1997; 蔡雄錫, 『高麗前期 社會構造와 本貫制』,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許興植, 『高麗時代의 본과 居住地』, 『高麗社會史研究』, 일조각, 1981.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본관의 생성·소멸과 분화·발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³⁾ 특히 갑오경장 이후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갖게 되면서 전혀 혈연적 연관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동성동본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나라 성과 본관의 생성단계에서부터 동성동본이라고 해서 반드시 동일부계친이었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賜姓과 賜貫에 의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비록 태조의 사성이 지방 세력가를 매체로 하였다는 점은 수궁하나, 그 대상이 지방세력가 개인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시 지방세력은 호족으로 지칭되는 同一親族集團으로 구성된⁴⁾ 것이 아니라 여러 친족집단이 혼재되어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집단이 태조에게 협조해 오면 사성을 하였는데, 이는 집단의 대표자 개인에게 준 것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준 것이라 보겠다.⁵⁾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 태조의 사성과 본관 사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姓氏와 賜姓

우선 우리의 성씨에 대해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3) 정진영, 『한국·성과 본관』, 『역사비평』 53, 2000, 180-181쪽.

4) 旗田巍, 앞의 논문; 李樹健, 앞의 책 참조.

5) 이에 대하여 성씨집단은 인민 장악을 위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혈연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洪中昇, 앞의 논문, 57-58쪽) 하여, 촌락사회의 부계혈연집단 설을 부정하면서 국가에서 촌락의 우두머리에게 준 성씨가 촌락민 전체의 성씨가 되었다는 견해(洪中昇, 앞의 논문, 1992)와, 또 고려초에 있어 豪富層이나 국가에 공이 있던 세력에게 土姓이 分定된다면 그 예하에서 본래 父系血緣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家父長制의으로 편성되어 있던 家戶들도 동일한 성씨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蔡雄錫, 앞의 논문, 1986, 370쪽). 한편 고려초 지방사회는 하나의 성씨가 집단 전체를 대표하거나, 성씨의 보유가 특정계층에게만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이중서, 앞의 논문, 96쪽).

성씨의 취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중국에서 유래한 성씨는 처음에는 사물의 이름을 쓰기도 하였지만, 후대에는 대부분 나라 이름이나 군현의 명칭을 성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황제로부터 성을 하사받는, 이른바 賜姓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중국은 『左傳』 권1 隱公 8년조에, 黃帝 이래 帝王이 封侯建國함에 있어 ‘因生以錫姓’ 하고 ‘胙之土而命之氏’한 것에서 보듯이,⁶⁾ 성씨는 계속 분화하여 같은 조상이면서 姓을 달리하기도 하며, 同姓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또는 父의 姓을 따르기도 하고 또는 母의 姓을 따르는가 하면, 또는 혈연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冒姓을 하거나 變姓·賜姓·自稱姓하기도 하였다.⁸⁾

우리나라에서 중국식 한자성의 수용과정은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족·관료·양민 및 천민순으로 보급되어 갔다. 그리고 한식 성씨의 수용 및 보급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① 왕실과 중앙귀족층에게 수용된 시기는 삼국 말기부터 신라 하대까지이며, ② 지배층 일반에게 성씨가 보급되어 성과 본관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초기이며, ③ 양민층에게 확대된 시기는 고려일대에 걸쳐 진행되었다. 즉 우리 역사에서 중국식 성씨제도는 벌써 삼국시대부터 왕실, 귀족 순으로 수용되어 왔지만 한국적 성씨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고려 초기였다.⁹⁾

이러한 후삼국시대 지방 호족의 성씨 취득은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 성장과 신라 중앙 문화의 지방으로 확산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배경과 신라 하대 중

6) 성씨 개관은 李樹健, 『성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1991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7) “無駟卒 羽父請諡與族 公問族於衆仲 衆仲對曰 天子建德 因生以賜姓 胙之土而命之氏 諸侯以字爲諡 因以爲族 官有世功 則有官族 邑亦如之 公命以字爲展氏”(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修訂本, 1981, 北京 中華書局).

8) 李樹健, 앞의 책, 37쪽.

9)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李重煥은 그의 저서 『擇里誌』 總論條에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 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漢姓의 보급과정을 ㉠ 고려초 錫姓 이전의 姓氏(三國의 宗姓, 駕洛國姓), ㉡ 중국에서 東來한 성씨, ㉢ 고려초 錫姓 등 셋으로 나누면서 ㉠과 ㉡을 제하면 나머지는 모두 ㉢에 해당한다고 하였다(李樹健, 앞의 책, 58쪽 및 135쪽 참조).

양 통제력의 점진적인 약화라는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격심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신분제의 재편성과과정에서 太祖 王建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당대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전국의 豪族을 각 출신지역 별로 세력관계를 고려하여 지역적 신분적 재편성을 단행한 성씨체계가 뒷날 『세종실록지리지』의 성씨로 나타났다고 한다.¹⁰⁾

우리나라 성씨체계 가운데 큰 특징을 이루는 것은 본관제도이다. 성은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異族이요 반드시 성과 본관이 같아야만 同族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론이지 실제로는 예외가 많아 상당히 복잡하다. 씨족의 연원을 같이하면서도 성 또는 본관을 달리하는 성씨가 많은가하면, 반대로 異族이면서도 성과 본관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즉 同族의 同姓同本과 同姓異本, 同族의 異姓同本과 異姓異本, 異族의 同姓同本과 同姓異本, 異族의 異姓同本과 異姓異本 등 8가지 경우가 있다.

본관의 연원을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을 사용하기 전인 7세기 이전에는 그 사람의 출신지(거주지)가 신분의 표시로서 성의 구실을 하였다. 둘째, 본관이란 始祖의 출신지 또는 그 씨족이 대대로 살아온 고장을 가리킨 것이다. 셋째, 신라말 고려 초 이후 성이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혈족계통을 달리하는 동성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족의 동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동족의 표시로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성의 분화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를 성 앞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본관이 곧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으므로 주로 지배층에 사용되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성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신분질서의 유지와 효과적인 징세조역의 필요상 일반주민에게까지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본관은 시조의 발상지 외에 封君地, 賜貫地, 또는 그 後孫의 一派가 이주한 곳이 새 본관이 되었다.

고대 중국의 경우, 성은 天子가 내리는 것이며(賜姓), 諸侯의 경우 그 출생

10) 李樹健, 앞의 책, 58쪽.

에 연유하여 성을 주고 그 封地(采邑)에 연유하여 씨를 주는 것이라 하였다.¹¹⁾ 그리고 제후는 사성할 수 없으므로 그 支族인 公孫들은 그 王父의 字로써 씨를 삼았다 한다. 또 官職者나 治邑者는 世功이 있을 때 그 관직명이나 고을 이름으로 씨를 삼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姓氏賜與는 우선 국왕의 지배를 전제로 그 영역내의 인민을 출생의 지연에 따라 성별을 나누되 다시 일족을 이룰만한 지배세력에게는 씨를 명함으로써 그 族系를 분명히 하였다.

3. 賜姓과 豪族

후대에는 혈연집단간에 동일한 본관과 성씨를 사용하면서도 시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조선전기에 족보를 발간했거나 草案해 놓았던 가문은 일단 중간적인 정리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후기에도 내용이 충실한 족보를 남길 수 있었지만, 이에 반해 중간의 정리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조선후기 내지는 韓末에 와서 비로소 족보를 편찬하려고 했던 가문은, 즉 신흥 兩班들에 의해 작성된 家乘이나 족보는 자의적인 조작과 수식이 가해졌을 것이고, 그 결과 18세기 이후에 처음 나온 족보들은 대체로 자기 先祖가 신라 내지 고려시대부터 명문출신이었고 또 家門의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데서 世系가 상당히 소급되었는가 하면 족보상에 기재된 先祖의 官職도 과장되어 있다. 또 同姓은 당초에는 同本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후대에 내려올수록 大同譜의 성격을 띤 족보가 많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래서 실제 血緣의으로 전혀 다른 姓貫이 同姓同本으로 오인되는 예가 많았다’고¹²⁾ 한다.

11) 左傳에서는 得姓의 배경을 ‘賜姓受氏’ 외에 ‘以字·諡·官·邑爲氏’ 등 다섯 가지를 열거한 데 이어, 鄭樵의 通志略 氏族조에서는 무릇 得姓受氏한 연원으로 32가지를 들고 있다(李樹健, 앞의 책, 10쪽).

12) 李樹健, 앞의 책, 32쪽.

물론 실제 혈연적으로 다른 성관이 동성동본으로 표기된 것은 시간적으로 차이를 두고 후대에 또다른 혈연집단이 같은 성씨를 칭한 까닭에 표현된 현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首露王을 시조로 하는 이른바 駕洛金氏와 조선후기에 이르러 慶州金氏에서 분파된 金寧金氏, 일본 귀화인 金忠善을 시조로 하는 이른바 後金海金氏가 있다. 그리고 구안동김씨와 신안동김씨도 이에 해당하며, 唐洪과 土洪으로 구분되는 南陽洪氏도 있다.

이처럼 실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성립된 혈연적으로 전혀 다른 성씨가 후대에 동성동본으로 오인된 경우가 많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성립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본관이 같아 각자 성이 성립될 시초부터 동성동본이기는 하나 그 시조를 달리하여 성립된 성씨가 후대에 동성동본으로 인식된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고려 태조의 賜姓과 賜貫에서부터 유래된 것도 있는 듯하다.

성씨제도의 하나인 賜姓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왕실과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귀화인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다. 사성의 성격은 유덕한 자를 표창하는 일종의 영전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귀순한 호족 대우의 표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후삼국시대 호족들은 왕건과의 연결과정에서 고위 관료와 개국공신 또는 통일공신이 되고, 각기 姓과 本貫을 分定 또는 下賜받기도 하였다.

지금부터 고려 태조에 의한 사성에 대해 살펴보자.

고려왕조의 성립과 통일과정에서 왕건의 휘하 장상을 위시하여 城主·將軍·村主 등 귀순호족에 대한 사성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배현경·신승겸·복지겸 등 개국공신들에 대한 사성, 지방의 재지호족에게 대한 사성도 있었고, 이미 漢姓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은급의 형식으로 새로운 성을 하사하는 경우가 있었다.¹³⁾

특히 태조는 자신의 성인 王氏를 賜姓한 경우가 많았다.

④ -① 王儒는 본래 姓名은 朴儒이고 字는 文行이며, 光海州(春川) 사람이다 ...

13) 李樹健, 앞의 책, 59쪽.

드디어 王氏를 賜姓받았다(『고려사』 권92, 王儒傳).

② 渤海國 世子 大光顯이 무리 수만을 거느리고 來投하자 賜姓名하여 王繼라 하고 宗籍에 부쳤으며, 특별히 元甫를 주어 白州를 지키고 제사를 받들게 했다(『고려사』 권2, 태조 17년 7월).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려 태조는 지방세력가와 내투자에게 왕씨를 사성하였다. 왕유의 경우는 춘천지역의 박씨였는데 왕씨를 사성받았다.¹⁴⁾ 발해국의 왕자 大光顯의 경우도 王氏를 사성받아 이름이 王繼가 되었다.

이외에도 왕씨를 사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는 더 있다. 예를 들면 皇甫能長의 경우는 본래는 皇甫氏였으나 왕씨를 사성받아 王能長이라 표기되었다.¹⁵⁾ 그리고 廣州지역 호족인 王規 역시 왕씨를 사성받았다.¹⁶⁾ 또 韓申一도 본래는 韓氏였으나 왕씨를 사성받아 王申一이 되었다.¹⁷⁾ 이러한 고려 태조 자신의 성씨인 ‘王’성을 하사한 것은 피사성자를 자신의 일가친척으로 의식케 함으로써 일종의 擬制家族의인 관계를 성립시켰다.

그런데 강릉 왕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이 태조로부터 왕씨를 사성받기는 하였으나, 강릉 왕씨가 하나의 동일한 친족원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고려 초의 溟州將軍 順式에게 王姓이 주어졌다. 명주의 강력한 지방세력가인 順式은 태조가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한 뒤에도 태조에게 불복한 독립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에 태조는 이 세력의 포섭에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 侍郎 權說의 건의에 의해 內院에 승려로 있던 순식의 아버지 許越을 파견하

14) 王儒는 王仲儒라고도 하였다(文暉鉉,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研究』, 螢雪出版社, 1987, 190쪽).

15) 皇甫能長이 『진공대사탑비문』에는 ‘王能長’이라 표기되어 있다(『조선금석총람』 상, 1919).

16) 왕규는 본래는 廣州李氏일 가능성이 있는데 태조에게 귀부하면서 왕씨를 사성받은 것이란 추측과(李樹健, 앞의 책, 131쪽), 왕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본래 威規인데(姜喜雄,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의 新解釋』, 『韓國學報』 7, 1977, 81쪽) 왕씨를 하사받은 것이란 견해도 있다(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224쪽).

17) 『高麗史』 태조세가에 韓申一과 王申一 두 이름이 동시에 나온다. 한편 王逢規 역시 태조에게 귀부후 왕씨를 사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여 간곡하게 설득한 결과 순식은 태조에게 복속키로 하고, 922년(태조 5) 7월 20일 長子 守元을 보내어 귀순하였다. 이에 태조는 守元에게 王姓과 田宅을 하사하였다.¹⁸⁾ 그리하자 이에 감복한 순식은 아들 長命을 精兵 600명을 거느리고 開城에 보내어 宿衛케 하였다. 그리고 928년(태조 11) 정월 25일 명주장군 순식은 직접 부하들을 인솔하고 入朝하자 태조는 기뻐하여 순식에게 王氏를 사성하고 大匡에 임명하고, 그의 아들 장명에게는 廉이란 이름을 하사하고 元甫에 임명하였다.¹⁹⁾ 그리하여 왕순식을 시조로 하는 강릉김씨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922년 아들 수원에게 왕씨를 하사한 뒤, 928년 순식에게 왕씨를 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경우는 태조가 지방세력가의 친족원 모두에게 왕씨를 하사한 것이 아니었다. 아들 수원과 아버지 순식에게 따로따로 왕씨 성을 하사하고 있다.

그리고 순식을 따라 태조에게 함께 歸附한 그의 小將 官景에게도 동시에 王姓을 하사하였다.²⁰⁾ 즉 왕경은 순식의 소장으로서 왕씨를 사성받았다. 관경은 순식과는 직접 혈연적인 관계는 없고 단지 순식의 군단을 지휘하는 무장이었던 것 같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관경은 순식과는 상하관계로 연결된 명주세력의 한 구성원이었다. 여기서 관경은 순식과는 부계 혈연을 달리하면서 그도 이때 왕씨를 사성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또한 강릉왕씨의 일원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순식의 후손들과 한가지로 강릉을 본으로 하는 왕씨로 계승되어 졌다. 이처럼 왕순식가와 왕경가는 서로 따로 왕씨를 사성받은 것이다.

그리고 왕순식이나 왕경과는 가계를 달리하는 또 하나의 강릉 왕씨가 있다.

⑧ 王伯은 처음 이름은 汝舟였다. 강릉인으로 본래 성은 金인데, 신라 太宗의 5세손 周元의 후손이다. 遠祖 父는 태조를 도와 공로가 있어 관직이 內史승이 되

18) 『고려사』 권1, 태조 5년 6월.

19) 『고려사』 권1, 태조 11년 정월조 및 권92, 왕순식전 참조.

20)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1년. 그리고 官景의 딸은 태조의 貞穆夫人이 되었다(『고려사』 권88, 후비1).

었다. 태조가 그 딸을 맞아 비로 삼고 王姓을 주었다(『高麗史』 권109, 趙廉傳附王伯傳).

이처럼 王父 역시 김주원의 후손으로 태조에 의하여 왕성을 하사받았다. 그리고 그의 딸은 태조의 大溟州院夫人이 되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왕경의 경우처럼 왕예 역시 순식의 집단이 사성될 때 그 일원으로서 왕성을 하사받은 듯하다.

그리하여 태조에 의하여 사성된 같은 江陵 王氏이면서도 왕순식과 왕렴처럼 부자간에도 각각 왕씨를 사성하였고, 그리하여 강릉왕씨라는 같은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조를 王順式, 王景, 王父로 각각 달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태조에 의해 행하여진 사성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 강릉 지역의 인물들에게 왕씨를 사성한 것에서 보듯이 이 집단에 속한 경우는 모두가 왕씨를 사성하였고, 이들은 모두 강릉왕씨가 된 것이다. 이처럼 태조의 사성은 어느 지역의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한편 고려 태조는 하사한 성에는 왕씨 뿐만 아니라 종래 신라왕조의 왕성인 金도 있었고, 名望姓인 張이나 權 또는 裴, 柳, 李, 洪, 康도 있었다.²¹⁾

㉠ 權幸은 본래 姓은 金이다. ... 드디어 고려에 투항하자 太祖가 기뻐 말하기를 幸은 능히 기미에 알고 권도에 통달하였다 하고, 이어 權氏를 賜姓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24, 安東府 人物條; 『權廉墓誌銘』; 『權傅墓誌銘』).

㉡ 大小西院夫人 金氏는 行波의 딸이다. 行波는 활을 잘 쏘았으며 太祖가 金氏를 賜姓하였다(『고려사』 권88, 后妃1).

이처럼 洞州 호족인 行波는 金氏를 사성받았다. 특히 고창군전투에서 태조를 도와 공을 세운 이른바 안동의 三太師에게는 權·金·張의 3성이 사성되었다고 한다.

21) 혹은 새로운 姓을 주는 경우와는 달리 이미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태조의 개국공신 弘述·術은 洪氏를(홍유), 白玉三·白玉衫은 裴氏를(배현경), 能山은 申氏를(신승겸), 卜沙貴·砂瑰는 卜氏를(복지겸) 사성받았다. 또 權說은 劉氏를 사성하여 劉權說,²²⁾ 公萱은 康氏를 사성하여 康公萱이 된듯하다.²³⁾

이밖에도 기록에 동일인이면서 성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曲衿會(『고려사』 태조세가)와 李衿會(『고려사』 태조세가), 柳陟良(『고려사』 태조세가)과 李陟良(『조선금석총람』 상), 金律熙(『조선금석총람』 상)와 蘇律熙(『조선금석총람』 상), 仇足達(『조선금석총람』 상)과 具足達(『조선금석총람』 상) 등의 기록이 있다. 이들의 인명은 뒤에 본래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성씨로 표기된 것으로, 이 새로운 성씨는 아마 태조의 사성으로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貞州柳氏 柳天弓의 경우도 柳氏를 사성받은 듯하다.²⁴⁾

또 賜姓만 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하사한 賜名의 경우도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대광현이 王繼, 김순식의 아들 장명이 王廉이 된 바가 있고, 특히 術은 洪儒가 되고,²⁵⁾ 能山이 申崇謙이²⁶⁾ 되고, 沙貴가 卜智謙이 되었으며,²⁷⁾ 白玉三이 裴玄慶이²⁸⁾ 된 경우 그러하다. 그리고 지방세력가들이 이미 사용하는 성을 인정하면서 이름만 새로 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李棹이나²⁹⁾ 金宣弓의³⁰⁾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하여 洪儒는 義城洪氏, 申崇謙은 平山申氏, 卜智

22) 權說(『고려사절요』 권1, 태조 5년 7월)과 劉權說(『淨土寺法鏡大師塔碑』, 『朝鮮金石總覽』 상),

23) 公萱(『고려사절요』 권1, 태조 12년 12월)과 康公萱(『菩提寺大鏡大師塔碑』, 『朝鮮金石總覽』 상).

24) 金行波가 두 딸을 侍寢시켜 金氏를 하사받았듯이, 貞州柳氏도 그러했을 것이다(李樹健, 앞의 책, 143쪽 각주 18 참조).

25) 『고려사』 권92, 洪儒傳. 혹은 弘述이다.

26) 『고려사』 권92, 洪儒傳附申崇謙傳,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1 황해도 평산, 권46 강원도 춘천, 권39 진라도 곡성.

27) 『고려사』 권92, 洪儒傳附卜智謙傳. 혹은 卜砂瑰이다.

28) 『고려사』 권92, 洪儒傳附裴玄慶傳. 혹은 白玉衫이다.

29) 李棹: 太祖南征 至錦江水漲 棹護涉有功 賜名棹 官至太師三重大匡(『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全義縣 人物條).

30) 金宣弓: 太祖征百濟 至崇善募從軍者 宣弓以吏應募 太祖喜 賜所御弓 因賜名焉(『신증동국여지승람』 권29, 善山府 人物條).

謙은 沔川卜氏, 裴玄慶은 慶州裴氏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 성씨와 洞州金氏, 義城金氏, 文化柳氏, 安東權氏, 安東金氏, 安東張氏, 全義李氏, 善山金氏 등은 태조의 사성으로 출현한 성씨이다.

이처럼 태조는 개국 공신 및 고위 관료와 귀순 호족들에게 왕족의 성을 비롯한 새로운 성을 주거나 또는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을 인정해주는 賜姓을 하면서, 때로는 이름을 주는 賜名을 하였다.

한편 사성의 대상은 집단의 유력자 뿐만은 아니라 집단에 속한 일반민까지도 포함하였다.

① 俗說에 전하기를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에 木州 사람이 여러 번 배반한 것을 미워하여 그 고을에 성을 내렸는데 모두 짐승이름이었다(賜其邑姓 皆以畜獸). 뒤에 牛는 于로 고치고 象은 尙으로 고치고 豚은 頓으로 고치고 場은 張으로 고쳤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46 木川縣 姓氏條).

위 문장에서 ‘賜其邑姓’을 ‘그 읍성’, ‘그 읍의 성’, ‘그 읍 사람의 성’ 등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태조가 木州人에게 邑姓을 주었다는 것은 당시 목천 지역내에 존재하던 유력한 세력집단들에게 각각 여섯 가지의 동물 이름을 나타내는 성씨를 내렸다는³¹⁾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동물성을 가진 자들은 다른 지역의 주민과 구별이 되게 한 정치적 성격을 띤 조치였다. 더구나 여기서 동물성을 가진 성씨집단은 반드시 동일한 혈연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라리 목천지역의 인민을 지배통치하기 위한 특정집단에 대한 표시의 수단인 것이다.

결국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하는 집단에 대한 성씨의 사여는 그들을 그 지역에 긴박시키는 방법으로서 거주 이전의 제한조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의 세력

31) 이러한 사실은 조선 초기의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목천현 성씨조에 “土姓六：牛馬象豚場申 諺傳 改牛爲于 改象爲尙 改豚爲頓 改場爲張”이라는 기록이 있어 더욱 신빙도가 높다.

대표자 개인에게만 이들 동물 성씨를 내렸고, 이들 개인의 거주지를 한정하여 이주를 제한했다고 보기는 그 의미가 너무 축소적이고 약하다. 거주제한의 대상은 여섯 동물성을 받은 각각의 집단들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사성의 대상은 세력집단의 구성원 전체, 즉 지역집단에게 사여된 성씨는 세력의 대표자는 물론 그 친족들과 심지어 그 휘하의 일반민들 모두가 해당하였고, 이들 전체의 성씨가 되었을 것이다. 다만 수취대상에서 제외된 노비는 제외되었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이때 사성은 일반민에게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고려 태조에 의한 사성은 왕순식 부자의 경우처럼 특정한 호족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목천의 여섯 가지 동물성 사여한 경우에서 보듯이 개인보다는 친족 구성원과, 비록 동일 부계혈연에 속하지 않지만 그 집단에 포함된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양민에게 주어진 것이었다.³²⁾

4. 賜貫 및 成籍과 거주 제한

1) 賜貫

우리나라 성씨가 중국과 다른 특징은 본관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성씨제도란 바로 성과 본관으로 구성된 성관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성씨는 본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보다는 오히려 본관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태조 왕건은 이들뿐만 아니라 당대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을 대표했던 전국의 여러 호족들에게 각 출신지·거주지별로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을 분정하였다.

즉 고려 태조로부터 賜姓과 더불어 本貫을 사여하였다.

32) 하지만 필자가 고려초부터 전국의 모든 양민이 본관과 성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지역의 특별한 본관과 성씨는 거주제한 수단으로 그러했다는 것이다.

㉔-㉕ 申은 谷城 출신인데 고려 태조가 平山에 賜籍하였다(『朝鮮金石總覽』 下 318쪽, 申崇謙忠烈碑).

㉖ 세간에 전하기를 太祖 때 꿈 꿈을 꾸고 驛吏 韓氏 성을 가진 자가 큰 공이 있어 大匡 호를 주고 高丘縣 땅을 떼어 縣을 두어 그 鄉貫으로 삼았다고 한다(『高麗史』 권56, 地理1 貞海縣).

㉗ 琴儀의 字는 節之요 초명은 克儀로 본래 奉化縣 사람인데 뒤에 金浦에 賜籍하였고, 三韓功臣 容式의 후예이다(『高麗史』 권102 琴儀傳)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태조는 본관을 정하여주고 있다.

『고려사』에는 신승겸은 초명이 能山이며, 光海州人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는 본래 곡성현 출신이었으며 뒤에 춘천에 우거한 바 있다가 나중에 태조가 그를 다시 평산에 사관함으로써 마침내 평산신씨의 시조가 되었다.³³⁾ 즉 신승겸의 가문은 태조대에 평산을 사관하였다.³⁴⁾ 그리고 역시 한씨에게도 고구원을 관향으로 내렸으며, 금의는 金浦를 본관으로 하게 되었다.

본관이란 사용자들이 스스로 칭함으로써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받게 됨으로써 본관을 사용하게 되었다.³⁵⁾ 고려시대에 본관을 사용한 자들은 양수척과 같은 특수한 천인을 비롯하여 노비와 외한인 등 일정한 본관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국가의 부역도 부담하지 않은 계층을 제외한³⁶⁾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의 本貫이란 인용문 ㉔-㉕과 ㉗에서 보듯이 본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적을 붙여 등록한 지역의 행정구역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러한 본

33) 李樹健, 앞의 책, 125쪽.

34) 특히 평산지역은 고려 건국기에 태조를 도운 여러 호족세력이 있었고, 이들에게도 朴守卿家의 평산박씨, 庚黔弼家의 평산유씨를 사관하였다.

35) 金壽泰, 앞의 논문, 1981, 41-64쪽. 그러나 이와 달리 신라말 고려초의 유력자들이 스스로 칭하였다는 설도 있다(자세한 것은 金壽泰, 앞의 논문, 1981과 朴恩卿, 앞의 논문, 1990, 47-48쪽 참조)

36) 蔡雄錫, 앞의 논문, 366쪽. 한편 金壽泰는 앞의 논문, 1981, 51쪽에서 奴婢도 本貫을 가졌다고 하였지만, 이는 고려의 지방통치체제가 완성된 뒤의 양상이었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따르지 않는다.

관제도의 성립배경은 신라말 고려초에 전국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인구유동 현상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流離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백성들의 호구상태를 파악하고 또한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본관제도가 성립된 것이다.³⁷⁾

신라와 후백제의 멸망으로 후삼국통일을 완성한 뒤 태조는 본격적으로 대내문제에 전력할 수 있게 되었다. 대내문제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민생의 안정을 통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는 일이었다. 민생의 안정은 곧 국가통치에 필요한 인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에 민생안정을 위하여 당시 사회문제였던 유이민의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왔다.³⁸⁾ 특히 그 중에서도 즉위초부터 개별적으로 행해오던 지방제도의 개편은 드디어 태조 23년(940) 전국적으로 州府郡縣의 명칭개편을 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각邑의 土姓을 分定하였다.³⁹⁾ 토성분정시에는 신라의 진골·육두품 계층이나 성주·촌주로서 이미 漢姓을 가진 姓團은 그 성씨를 가진 채 각기 출신 군현의 토성이 되었고, 아직 한성을 갖지 못한 세력은 사성과 동시에 토성으로 책정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⁴⁰⁾

그리고 고려 건국초부터 유력세력들에게 賜姓과 더불어 賜貫함으로써 종전부터 점진적으로 취해오던 본관제도를 확대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사성을 하고 또 본관을 사여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본관을 가진 성씨의 집단을 정착시키려는 의도였다.⁴¹⁾

37) 金壽泰, 앞의 논문, 63쪽.

38) 金昌謙, 「高麗 太祖代 對流移民政策의 性格」, 『국사관논총』 35, 1992.

39) 李樹健, 앞의 책, 60-69쪽. 이와 달리 940년 토정분정설에 대한 비판도 있고(李泰鎮, 「서평」, 『사회과학논평』 4, 1986), 또 토성분정 시기를 995년(성종 14)으로 보는 입장(蔡雄錫, 앞의 책)과, 토성의 출현 시기를 고려 후기 신홍사대부 혹은 지방세력의 성장에서 찾는 견해도 있으며(金壽泰, 앞의 논문, 2000, 80쪽), 더구나 토정분정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李鍾晝, 앞의 논문, 95-96쪽).

40) 李樹健, 앞의 책, 55-56쪽.

41) 그러나 본관제에 의한 편제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蔡雄錫, 앞의 논문, 135쪽). 또 고려 초기에 본관과 성은 처음부터 결합되어 사용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다(金壽泰, 앞의 논문, 2000, 60쪽).

다시 말해 고려 태조는 통일사업을 완수한 뒤 공신들과 고급관료 및 후삼국 통일사업에 협조했던 호족들에게 그들 출신지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내리는 한편, 전국 군현을 개편하여 각 구획에 도착하고 있던 유력층에게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성을 나누어 주는 土姓分定을 하였다.

2) 成籍

앞에서 보았듯이 본관은 특정한 행정구역에 적을 올림으로써 성립되었다. 곧 이것이 호적이다.

고려 태조는 본관을 분정한 후에 호적사업을 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호적은 있었다.⁴²⁾ 그러나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여러 원인에 의하여 유이민현상이 만연되면서 籍이 매우 혼란해 졌다. 이에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는 혼란한 사회상황을 재편성할 필요에서 우선 태조 23년에 郡縣의 명칭 변경과 아울러 土姓을 分定하고 本貫을 사여하면서 지방사회를 재편성해 나갔다.

재편성의 실질적인 작업은 戶籍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나갔는데, 그 시기는 아마 태조 26년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① 淸道郡司籍을 살펴보면 天福 8년 癸酉, 태조 즉위 제26년, 정월 일 淸道郡界里審使 順英과 大乃末 水文 등의 柱貼公文에 “雲門山禪院의 長生은 남쪽 阿尼貼이고 동쪽은 嘉西峴이다.” 하였고, “同藪 三剛典의 典主人은 寶壤和尚이고 院主는 玄會長老, 貞座는 玄兩上座, 直歲는 信元禪師이다.”고 하였다. 右公文은 淸道田帳에 기재되어 있는데 확실하다(『삼국유사』 권4, 寶壤梨木)

② 이러한 일들을 영영 끊어지지 않도록 天福 8년 癸卯 10월에 依板 成籍하였다(『朝鮮寺刹史料』 上, 朝鮮總督府, 1911, 『伽倻山海印寺古籍』).

42) 『新羅村落文書』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祖堂集』 권17에 의하면 “道允姓朴 漢州 僞巖人也 累世豪族 祖考仕宦 郡譜詳之”라는 말에서 郡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 ①에서 보듯이, 이처럼 태조 26년에는 사원의 적이 작성되었다. 그 작성자는 里審使라는 직책을 띤 중앙에서 파견된 인물이다.

이때 조사하여 작성한 내용은 ①에서 보면 사원의 경계 그리고 사원내의 住持를 비롯한 책임 관리층의 승려명이다. 그리고 인용문 ②에서 보면 사원의 내력 등 이었다. 여기서 적이란 사원 호적의 준말이며, 또한 주첩은 고문서로 써 역시 호적을 의미하는 것이다.⁴³⁾

그런데 당시 里審使를 맡았던 자는 今有租藏들로서 이들은 流民의 安集 혹은 租稅와 賦役의 독촉·감독 그리고 각 지방 촌락의 田丁·戶口·寺院田 등을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때 작성된 寺院籍에는 사원에 속한 호구와 사원이 소유한 사원전 등의 토지도 함께 조사 수록되었을 것이다. 즉 사원에 속한 호구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또 사원에 속한 토지를 파악한 대장을 작성한 것이다. 그리하여 태조는 사원을 고려 개국초 지방통제의 한 방법으로 통제 관리하였다

태조 26년 무렵에 호적이 작성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寺院籍의 작성기록과 더불어 『고려사』의 軍籍 작성기록을 참조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㉔ (왕이) ‘武班으로서 나이가 많고 자손이 없는 자로 癸卯年(태조 26)부터 軍籍에 등록된 자는 모두 鄉里로 放還시키라. …’ 하였다(『고려사』 권3, 성종 7년 10월).

이들 자료에 의하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태조 26년, 天福 8년 癸卯에 사원은 물론 군인에 대한 호적의 작성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일반민들에 대한 호적의 작성도 이루어졌음을⁴⁴⁾ 짐작할 수 있다. 그렇

43) 金英夏·許興植, 『韓國中世의 戶籍에 미친 唐宋 戶籍制度의 영향』, 『韓國史研究』 19, 1978, 41쪽.

44) 호적의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태조 26년 외에도 ① 광종대의 노비안검법의 실시와 함께, ② 성종대의 지방제도의 정비 및 지방관의 파견과 더불어, ③ 정종 원년 주현군현의 공부세액을 정할 때 등의 몇 시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籍의 재정리작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본관을 준 시기는 빠르면 태조 말년이나 늦어도 정종대에 가능했을 것으로 본 견해도 있다(金壽泰, 앞의 논문, 1981, 61-63쪽).

다면 당시 적의 작성에는 토지와 호구가 함께 기록되었을 것이고, 이에서 미루어 본다면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내용이 파악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곧 그 지역이 본관제에 의한 지배질서 속에서 편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적의 작성은 생활의 불안정에서 발생하는 民의 流離 및 私民化의 방지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성과 본관의 사여 및 호적의 작성은 바로 국가의 구성상 필수요건인 백성들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면서 당시 사회적 현상의 하나였던 유이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⁴⁵⁾ 나타났다. 즉 이미 발생한 유이민을 특정지역에 새로 정착시켜 생업에 종사케 하면서 이들의 거주이전을 제한하여 또다른 유이민의 발생을 억제한 것이다. 그리고 유이민의 정착은 지역내에 인구의 재편제를 낳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⁴⁶⁾

그리고 이러한 본관제에 의한 편제가 이루어진 뒤,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태조에게 협조한 공이 있는 성씨의 시조를 일정한 지역단위에 城隍神⁴⁷⁾ · 山神으로 섬겨 본관을 鎮守하는 守護神으로 인정하여 공동체사를

45) 金壽泰, 앞의 논문, 1981, 59-60쪽.

46) 金昌謙, 앞의 논문. 그리고 그 결과는 종래의 경주 중심에서 이제 고려의 수도인 개경 중심의 인구편제에 의하여 국토의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풍수지리설이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47) 흔히 성황신앙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진 시기는 후삼국기 인물이 거의 죽고 宋과의 외교관계가 성립되는 光宗代 무렵으로, 그리고 城隍祠의 건립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조상을 성황신으로 배향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배세력으로서 오랫동안 존속하기 위한 지방세력들로 파악하였다(金甲童, 『高麗時代의 城隍信仰과 地方統治』, 『한국사연구』 74, 1991). 그러나 필자는 이와 생각을 달리한다. 성황신앙은 이미 大興郡에 蘇定方이 성황신으로 배향되었으므로(『신증동국여지승람』 권20) 唐의 영향을 받았던 신라시대부터 성황당이 있었을 것이고(鄭勝謨,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촌사회의 변동』, 『泰東古典研究』 7, 1991, 4쪽), 또 904년 궁예가 여러 관부를 설치할 때 성황의 수리를 담당할 障善府를 설치한 바 있으므로(『삼국사기』 권50, 궁예전), 성황사의 설치는 고려 태조의 후삼국통일 이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그리고 성황사의 건립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에 의하여 멸망한 후백제의 옛 영토 내에서 고려에 협조한 申崇謙, 朴英規와 그의 두 아들, 朴蘭鳳 등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토착세력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조상을 성황신·산신으로 배향하여 신성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고려에 대한 악감정상 용인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국가가 지방통제, 즉 지역공동체의 내부 결속을 강고히 하기 위하여 고려건국과 후삼국통일에 협조한 자를 내세워 이들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사를 행하도록 이끌어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에 부여의 庚

행하게⁴⁸⁾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는 이 인물을 특정지역의 공동시조로 인정하거나 공동수호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정함이 전제되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단위의 共同體意識을 고취시킴으로써 수호신의 비호 아래 지역민이 안정을 도모함과 공동체의식 속에서 이탈하여 유리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결국 필자는 고려 태조가 사성과 본관 사여 이후에 곧 성적사업을 하였던 데, 그 시기를 943년(태조 26, 혜종 1)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과 함께 해당 지역의 유력한 성씨의 시조를 모시는 공동제사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고취 등은 유민정책 중에서 사회적인 제제조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토에 편재된 인구가 다시 유이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태조대의 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성씨는 실제 혈연적으로 전혀 동일 직계는 물론 친족도 아니면서 동성 동본으로 오인된 경우가 있다. 그 연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고려 태조의 賜姓과 賜貫에서부터 유래된 것도 더러 있다.

태조의 사성은 특정한 호족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의 친족 구성원과, 이들과 동일부계 혈연에 있지 않지만 그 집단에 포함된 일정지역의 모든 양민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본관제도를 확대 실시하였다. 즉 고려 태조는 후삼국통일을 완수한 뒤 공신들과 고급관료 및 통일사업

黔甌을 모신 성황사에 대해 고려의 통일과정에서 후백제 극복이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이 지역에 성황신으로 모셔졌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김효경, 『부여 林川郡 城隍祠와 庚黔甌』, 『역사민속학』 26, 2008, 289-319쪽, 김갑동, 『고려 태조 왕건과 유금필장군』, 『인문과학논문집』 46, 대전대학교, 2009).

48) 蔡雄錫, 앞의 논문, 1981, 349쪽.

에 협조했던 호족들에게 출신지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내렸다.

그리고 940년(태조 23)에 전국 郡縣을 개편하여 명칭을 변경함가 더불어 각 지역에 도착하고 있던 유력층에게 土姓을 分定하고 本貫을 사여하면서 지방 사회를 재편성해 나갔다. 그 실질적인 작업은 戶籍의 정리 작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는 아마 943년(태조 26) 무렵이었다.

이러한 사성과 본관의 사여 및 호적의 작성은 바로 국가의 구성상 필수요건인 백성들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면서 당시 사회적 현상의 하나였던 유이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유이민을 특정지역에 새로 정착시켜 생업에 종사케 하면서 이들의 거주이전을 제한하여 또다른 유이민의 발생을 억제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씨의 시조를 일정한 지역 단위에 본관의 수호신으로 인정하여 공동 시조 내지는 공동 수호신으로 제사를 행함으로써, 지역단위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주민의 안정을 도모함과 여기에서 이탈하여 유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결국 사성과 본관 사여, 호적의 작성, 그리고 공동체의식 고취 등은 토지에 긴박시켜 인민의 거주이전에 대한 제제조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국토에 편재된 인구가 다시 유이민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다.

[주제어]

고려 태조, 호족, 본관, 성씨, 사성, 호적, 유이민

■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擇里誌』,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金石總覽』上.

2. 저서 및 논문

- 姜喜雄, 「高麗 惠宗朝 王位繼承의 新解釋」, 『韓國學報』 7, 1977.
- 旗田巍, 「高麗時代における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子女均分相續」, 『東洋文化』 22, 1957.
- 金甲童,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0.
- _____, 「高麗時代의 城隍信仰과 地方統治」, 『韓國史研究』 74, 1991.
- 김갑동, 「고려 태조 왕건과 유금필장군」, 『인문과학논문집』 46, 대전대, 2009.
- 金壽泰, 「高麗 本貫制度의 成立」, 『震檀學報』 52, 1981.
- _____, 「高麗初期의 本貫制度」, 『한국중세사연구』 8, 2000.
- 金英夏·許興植, 「寒國中世의 戶籍에 미친 唐宋 戶籍制度의 影響」, 『한국사연구』 19, 1978.
- 金昌謙, 「高麗太祖代 對流移民政策의 性格」, 『國史館論叢』 35, 1992.
- 김효경, 「부여 林川郡 城隍祠와 庚黔弼」, 『역사민속학』 26, 2008.
- 박은경, 「高麗時代 鄉村社會構造와 本貫」,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0.
- 浜中昇, 「高麗의 歷史的位置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1, 1984.
- _____, 「高麗初期村落의 性格をめぐつて」, 『朝鮮學報』 144, 1992.
- 宋俊浩, 「韓國의 氏族制에 있어서의 本貫 및 始祖의 問題」, 『歷史學報』 109, 1986.
- 서영대, 「한국·중국의 성황신앙사와 순창의 성황대신사적」, 『성황제와 성황당』, 민속원, 1998.
- 申奭鎬, 「韓國姓氏의 概說」, 『韓國姓氏大觀』, 創造社, 1971.
-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 서울대, 1980.
- 李鍾書, 「羅末麗初 姓氏 사용의 擴大와 그 背景」, 『韓國史論』 37, 서울대, 1997.
- 鄭勝謨,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촌사회의 변동」, 『泰東古典研究』 7, 1991.
- 정진영, 「한국: 성과 본관」, 『역사비평』 53, 2000.
- 蔡雄錫, 「高麗前期 社會構造와 本貫制」,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 _____,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許興植, 「高麗時代의 本과 居住地」, 『高麗社會史研究』, 일조각, 1981.

Study on the Bestowing of Surname and Clan Seat by Goryeo's founder Taejo

Kim, Chang Kyum

(Head of Cultural Contents Divisio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 this paper, I attempt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bestowing of surnames and clan seats that occurred during the reign of Taejo, the founder of Goryeo dynasty.

Taejo bestowed surnames not only to some specific powerful gentry(local strongman) but also to the commoners who formed part of their kinship group or communities. In later centuries erroneous perception developed amongst certain communities about having a common ancestor or common clan-seat, but in reality they had different patrilineal genealogical ties.

Gradually the expansion of clan seat took place. After Taejo unified the country give family name with their place of origin serving as clan seat to his ministers, high official and local strongmen. In 940 he also reorganized the administrative units, and powerful gentry in each area were allowed to use their respective places to use clan seat. In 943 genealogical registers started to be made.

The founding ancestor of the Family name was recognized as the common ancestor and protector deity of those who traced their clan-seat to that specific regional unit. They also performed common rituals and sacrifice which enhanced clan solidarity or a sense of common origin and brought about peace and security of the people in that region.

Bestowing of surname and clan seat by Taejo and the attendant manufacturing of

family registers and the sense of common origin may be interpreted as tool to stabilize the population to their specific regions and thereby establish social order during the early Goryeo period.

[Key Words]

Goryeo's founder Taejo, Local strongmen, Clan Seat, Family name, bestowing a surname, Family register, Wandering people.

논문투고일 : 2009년 6월 10일 / 논문수정일 : 2009년 7월 7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7월 20일